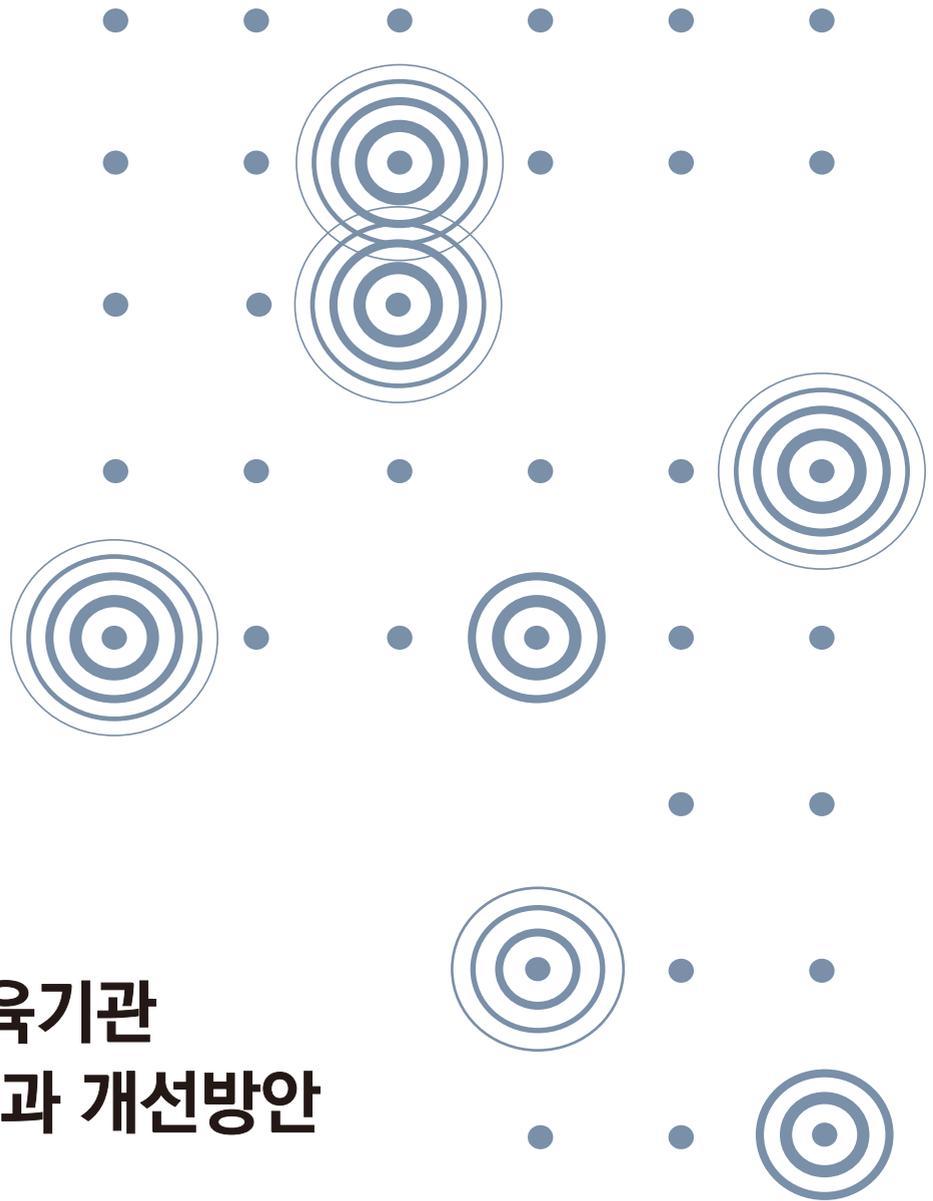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295호 2020. 3. 9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방안

윤민석

연구위원

문진영

연구원

—————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295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방안

발행인 서왕진
편집인 최 봉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0년 3월 9일

※ 이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방안

윤민석 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문진영 연구원
02-2149-1373
jymoon@si.re.kr

요약	3
I.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4
II.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련 쟁점	8
III. 국내외 교육기관과 유사직종 사례	12
IV. 정책제언	14

요약

노인 간병과 요양을 위한 전문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하는 제도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는 2010년 노인 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설치 가능하도록 설계된 설치제는 교육기관의 난립, 과다 경쟁과 편법 운영 등 문제를 초래했다. 지정제 전환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여 과거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의 교육은 곧 돌봄서비스의 질과 밀접하므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를 고려한 지정제의 공급조정 기제 마련과 지침 개선, 평가체계 도입, 업무대행위탁 방식으로 운영주체 전환,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서울시는 경기도 다음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많고, 이 중 83%는 개인이 운영한다.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은 실질적인 공급조절기제가 미비해 무분별한 교육기관 개설 등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양성지침에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의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평가체계나 모니터링 제도·인센티브 등이 없고, 일부 업무는 자치구 관할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

연중 지속 운영을 어렵게 하는 현장과 동떨어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시간은 240시간으로 해외 돌봄제공자에 비해 짧고 진입장벽이 낮다. 자격시험 합격자의 75%는 연령이 50~60대이며(2018년 기준),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교육기관 다수는 연 3회 시행되는 자격시험을 앞두고 한두 달 이내의 기간에 집중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강의실은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 전용으로 운영되어 시험기간 외에는 교육기관 운영이 어렵다. 더불어 10년간 동일한 학습교구와 수강료 기준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장벽으로 작용한다.

요양보호사 수요 고려한 지정제의 공급기능을 마련하고 평가체계 도입·운영주체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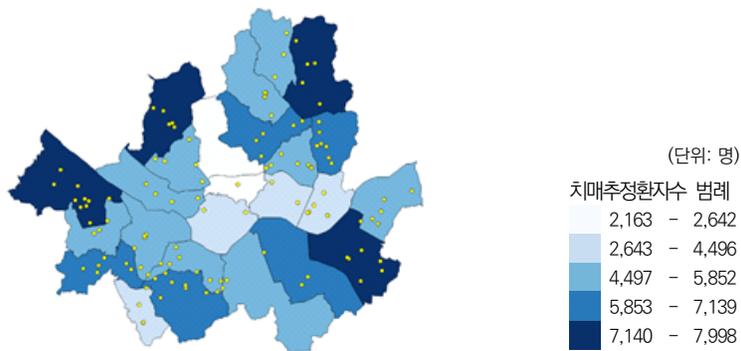
실질적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 운영을 위해 2~3년 주기로 요양보호사 수요와 적정 인원을 산출해 현업 요양보호사 대비 요양보호사 공급이 부족한 경우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교육기관 운영에서는 평가체계를 도입해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운영지침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교육기관의 지정·운영주체를 돌봄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업무대행 또는 위탁하는 것이 단기간의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보인다. 또는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자치구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거나, 교습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운영주체를 검토하여 교육기관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I.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I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 전달체계는 민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 방지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지정제

-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 수요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시기에 맞춰 단기간 많은 요양보호사 배출을 위해 설치제로 시작, 2010년 지정제로 전환
 - 설치제 시행 후 교육기관 과다 설치로 수강생 모집 등 기관운영이 어려워 다수의 교육기관이 휴·폐업하고 일부는 편법으로 운영
 -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개설 방지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2010년 교육기관 지정제로 전환
 - 서울시는 신규 교육기관 신청지 주변 1.08km 내 다른 교육기관이 있는지와 현업 요양보호사 수 대비 치매추정환자수와 노인인구수 비교 등을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



[그림 1] 치매추정환자수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분포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2018년 9월 30일 기준 총 125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73.8%는 개인사업체로, 경쟁구도 하에서 연중 지속 운영에 어려움 겪어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기초자료 수집 위해 실태조사 시행
 - 행정자료 분산으로 교육기관 관련 통합자료가 미비하여 실태조사 통해 교육기관 현황 파악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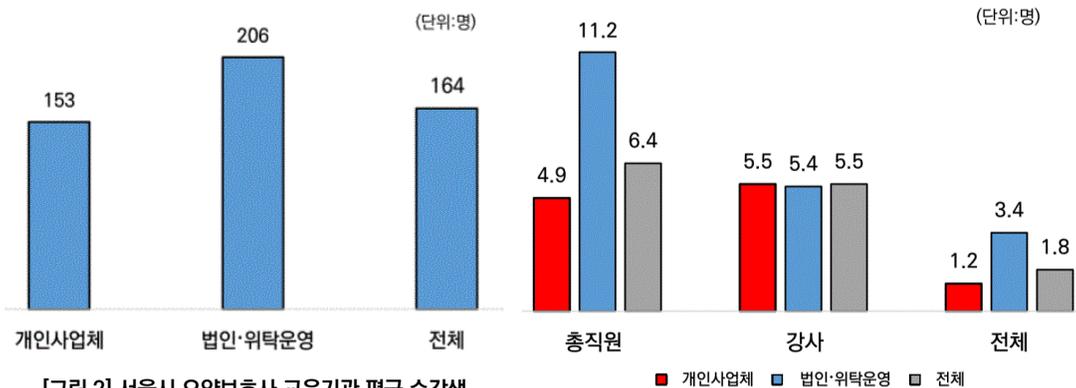
구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실태조사	요양보호사 의견 조사
조사목적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파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련 의견 조사
조사기간	2019.03.25~05.24(2개월)	2019.04.08~04.19(2주)
조사대상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67개 (회수율 60%)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요양보호사 102명
조사방법	온라인·우편 설문조사	설문조사(센터 협조)

- 법인·위탁기관과 개인사업체 운영기관 운영상의 차이 확인
 - 응답 교육기관의 73.8%는 개인사업체, 21.5%는 법인 직영, 4.7%는 위탁 운영
 - 개인사업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평균 직원수는 4.9명, 법인·위탁운영기관은 11.2명이며, 개인사업체 수강생은 153명, 법인·위탁운영기관 수강생은 206명으로 차이 존재
 - 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56.7%)은 교육비 일부를 지원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강생 확보에 유리하고,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로 기관 운영의 질 담보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일부는 운영비 부족분 충당과 재가요양기관 인력 수급 등을 위해 재가요양기관을 병행

[표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주체와 재가요양기관 운영 여부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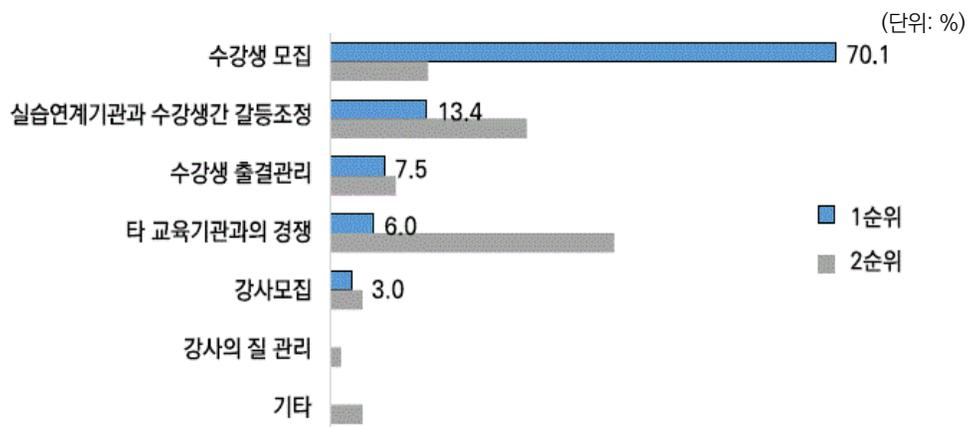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운영 주체	개인사업체	48	73.8
	법인 직영	14	21.5
	위탁 운영	3	4.7
	합계	65	100.0
재가요양기관 운영 여부	운영	37	56.9
	미운영	28	43.1
	합계	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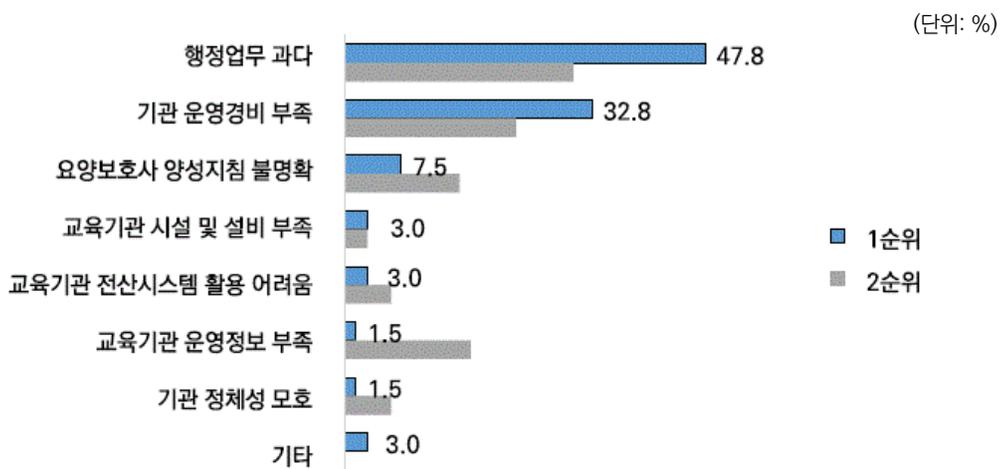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균 수강생 (2018년 한 해 기준)

[그림 3]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균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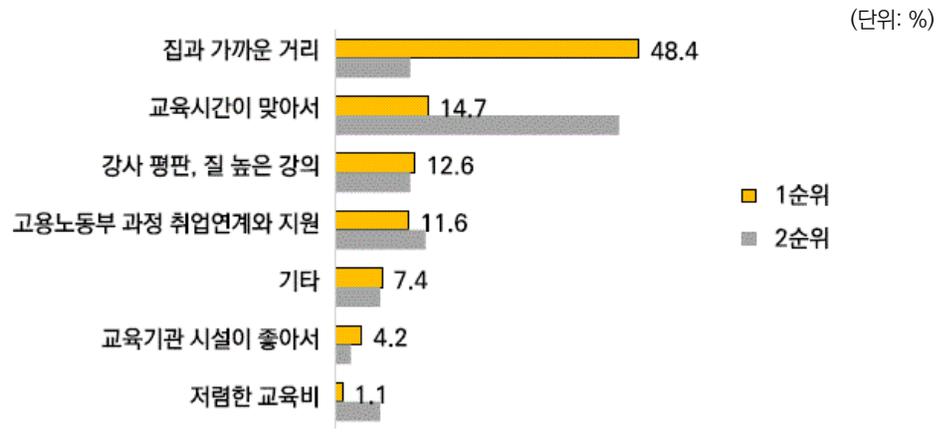
- 교육과정 운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수강생 모집, 교육생의 선호도는 집과 가까운 거리
 - 교육기관의 92.6%는 지정제 운영을 유지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해, 현재 교육기관 간 경쟁이 심하고 이로 인해 기관운영과 교육의 질 담보가 어려움을 시사
 -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는 수강생 모집이 가장 높고(70.1%), 실습기관과 수강생 간 갈등조정(13.4%), 출결관리의 어려움(7.5%) 순으로 조사
 - 기관 운영상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47.8%가 행정업무가 많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는 기관 운영경비 부족(32.8%), 양성지침의 불명확함(7.5%) 순으로 응답
 - 교육생의 교육기관 선정이유로는 교육의 질(12.6%)보다는 거주지와의 인접성(48.4%)이 더 큰 것으로 조사
 - 진입장벽이 낮은 자격제도와 교육과정 이수가 쉬운 교육기관을 선호하는 교육생의 경향으로 일부 교육기관은 수강생 모집이 쉽도록 수강료를 인하하거나, 느슨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교육기관의 질적 성장 저해



[그림 4]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



[그림 5] 교육기관 운영상의 어려움



[그림 6]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의 선택이유

II.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련 쟁점

I 교육기관 공급조정 기제와 실질적인 기준 부재로 관리·감독 난관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모호

- 서울시의 거리 제한 기준 1.08km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논란의 여지 존재
 - 다른 지역(인천, 부산, 대전, 광주)은 지역별 분포에 따른 별도의 구체적인 거리제한 규정이 없고, 각 지역의 수요에 따라 교육기관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는 지역은 신규 지정을 제한 중
 - 현재 서울시 역시 강서구의 교육기관이 10개 이상이라 신규 지정을 제한
 - 거리제한 기준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자료로 교육기관 지정 방안 마련 필요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공급 적정성 검토 필요

- 교육기관 지정 시 요양보호사 수요가 검토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측정기준은 부재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적정 규모는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 그리고 교육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 향상에 중요한 요인
 -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설치·운영은 교육생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수강료 편법 할인,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 등의 문제 야기
 - 교육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질 높은 교육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급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

평가체계 부재는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어려움 초래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상 시·도지사에게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와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수단 부재
 - 광역시·도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보유
 - 양성지침상 광역시·도는 교육기관(실습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정기(1회) 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명시
 - 광역시·도의 재량으로 추가 사항을 관할 교육기관에 시달하거나 요청할 수 있고, 벌칙·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의 사업 정지 또는 지정 취소 권한 보유
 - 하지만 구체적인 평가체계, 모니터링 제도,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한계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서울시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경기도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196개, 서울시는 121개의 교육기관 관리·감독(2019.6 기준)
 - 다수의 시·도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자격증 발급, 지도·점검 등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1~2인이 담당
 - 상대적으로 교육기관 수가 많은 서울시는 교육기관 담당 인력의 관할 범위가 광범위
 - 요양보호사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출석부 수기 작성과 대조 확인 절차 등 과중한 행정 업무는 담당 인력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도 부담

[표 2] 광역시·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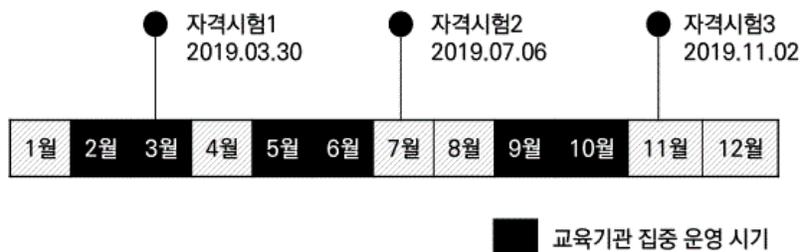
지역	교육기관 수	지역	교육기관 수	지역	교육기관 수
경기	196	전북	43	광주	23
서울	121	전남	43	대전	21
경남	83	강원	31	울산	19
부산	54	대구	30	제주	12
충남	50	인천	26	세종	5
경북	50	충북	24	-	-

자료: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2019.6월 열람자료)

I 현장과 동떨어진 영양보호사 양성체계는 연중 지속 운영에 장벽

자격시험 위주의 단시간 교육과정과 강의실 사용 제한으로 교육기관 연속 운영에 차질

- 민간이 운영하는 영세한 교육기관은 영양보호사 자격시험 시기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운영
 - 영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75%는 50~60대이며(2018년 기준), 연중 3회 실시되는 자격시험을 앞둔 한두 달 이전 시기의 교육과정에 등록이 집중되는 경향
 - 해외 영양보호사 교육시간이 일본은 최대 1,800시간, 영국 2년, 싱가포르 2년, 독일 3년인 것에 반해 한국은 240시간으로 교육기관 지속 운영이 어려운 시스템



[그림 기] 영양보호사 교육기관 집중 운영 시기

- 교육기관의 강의실은 양성교육과정에 한해 운영되어 상시 운영에 한계
 - 양성지침상 영양보호사 교육기관 강의실은 양성교육과정에 한하여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양보호사 직무역량 강화 관련 교육과정에 한해서만 활용 가능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양성지침

- 10년 전부터 적용된 학습교구 기준은 현재의 기술개발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
 - 학습교구 각 1개와 7가지 용품을 유형별로 10인당 1세트 이상 갖추도록 규정
 - 교육기관의 자원에 맡기거나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학습교구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10년간 동일한 수준의 교육생 수강료는 양질의 강사진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장벽
 - 양질의 교육보다는 저렴한 교육비와 수월한 자격증 취득을 선호하는 교육생의 경향으로, 교육기관 간 경쟁에 따라 수강료와 교육과정이 하향 평준화

- 현장 업무의 기반인 양질의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미비
 - 실습기관 지도·점검 업무는 광역시·도의 소관사항이나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권한은 자치구에 있고 시·도의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
 - 해외 돌봄제공자에 비해 실습시간이 현저히 적고 실습을 지도하는 요양기관도 교육을 위한 여력과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
 - 상해보험 가입 등 실습생의 사고에 대비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실효성이 부족
 - 실습의 대상자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가족도 실습생의 방문실습을 꺼리는 등 요양보호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

Ⅲ. 국내외 교육기관과 유사직종 사례

Ⅰ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고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고 교육기관을 관리·감독

- 싱가포르의 국가의 학제 또는 보건부의 통합돌봄 체계에서 돌봄제공자 양성
 - 싱가포르는 직업훈련원(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ITE)과 돌봄통합기관(Agency for Integrating Care; AIC)의 9개 교육기관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자 양성
 - 직업훈련원은 싱가포르의 학교 제도상 중등학교 졸업 이후 일정 수준의 성적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고 교육·훈련·경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 돌봄통합기관은 1992년 보건부 산하 기관에서 2008년 독립 법인체로 설립되어, 돌봄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훈련시키는 국가적인 통합 돌봄제공기관



[그림 8] 싱가포르 직업훈련원 ITE College East의 Community Care Training Centre
자료: 싱가포르 ITE 홈페이지(<https://www.ite.edu.sg/colleges/ite-college-east/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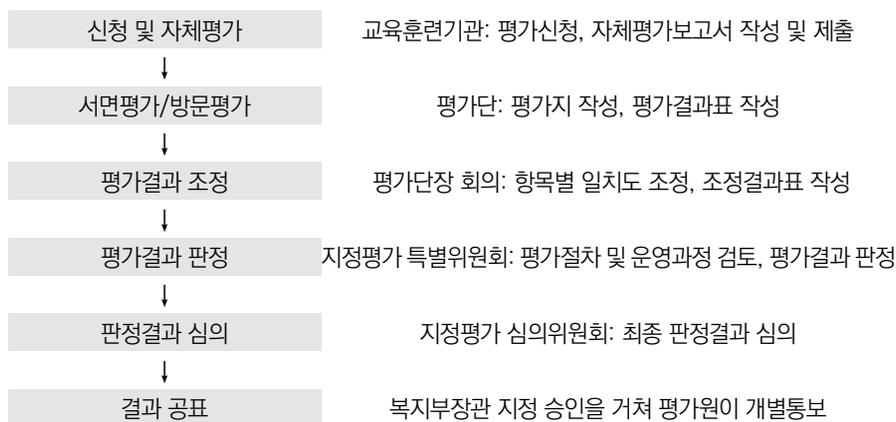
- 일본은 지자체·학교·사회복지법인이 개호보험 인력 양성시설의 운영주체
 - 개호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은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전문학교, 단기 대학, 대학 등의 양성시설에서 시행
 - 개호복지사 양성시설은 대부분 전문학교이며, 단기 대학·대학 개설도 증가 추세
 - 개호보험 인력 양성시설 지정 기준은 한국의 시설·인력·교육과정 기준과 유사
 - 인터넷이나 학생 모집용 팸플릿 등으로 양성시설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공개하도록 규정

-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노인돌봄 교육을 일원화하고 노인돌봄법에 노인요양사 교육 포함
 - 독일은 요양인력의 국가적 지위 향상과 자격관리·자질에 대한 감독을 국가가 책임
 - 연방제 원칙에 따라 노인요양사 직업교육은 주정부가 관할하고 국가적으로 공인된 노인 수발직업학교가 교육 전반을 담당

I 별도의 평가기관을 두어 평가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

양적·질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평가전담기관·심사위원회가 평가를 담당

- 시·도가 공모하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정·심사를 진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재단, 협회, 사단법인 등의 주체가 운영
 - 시·도지사가 시·도별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활동지원사 수요 등을 고려해 공모계획을 통해 신규로 교육기관 지정
 - 설치기준은 기관 현황과 교육운영능력, 교육관리 계획 등이 주된 내용이며, 심사위원회가 교육기관 지정과 심사를 진행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담당
 - 신규 교육훈련기관의 사전 역량평가와 교육과정 관리를 통한 질 제고가 목적
 - 교육훈련기관은 지정 판정 후에도 지정유지 의무가 있어 질 관리의 지속성 확보
 - 자체평가, 서면평가, 방문평가, 조정, 판정 등의 과정을 거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 국가시험 응시 가능



[그림 9]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방법

자료: 박연숙, 2017,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설명회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운영방안, 한국간호교육평가원

IV. 정책제언

I 수요 고려한 지정기준 마련하고 평가체계 도입·운영주체 검토 필요

구체적인 기준으로 지정제의 공급조정 기능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운영 방안 모색

- 정기적인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로 지정제 운영의 공급조정 기능 마련
 - 신규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2~3년 주기로 요양보호사 수요와 적정 인원을 산출해 요양보호사 공급이 부족한 경우 신규로 지정하는 방안 제안
- 교육기관 관리·감독 효율화를 위한 평가체계 도입과 운영주체 검토
 -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과 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자치구 또는 교육청 업무대행·위탁 방안 모색
- 연중 지속 운영 위해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모색
 - 다수의 민간기관 간 경쟁 구도와 짧은 교육과정으로 인한 연중 지속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돌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정기적인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로 지정제 운영의 공급조정 기능 마련	- 신규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적 기준 마련 · 정기적으로 서울시 노인장기요양인정자 추계에 따른 요양보호사 수요를 파악해 현업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경우 신규 교육기관 지정
교육기관 관리·감독 효율화를 위한 평가체계 도입과 운영주체 검토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지침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도입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과 관리·감독 효율화를 위한 업무대행·위탁방안 모색
연중 지속 운영 위해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	- 강의실 사용과 수강료 기준 완화 등 운영지침 개선 - 돌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 도모

I 정기적인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로 지정제 운영의 공급조정 기능 마련

신규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적 기준 마련

- 2~3년 주기로 요양보호사 수요와 적정 인원을 산출해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 시 신규 지정
 -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인정노인의 증가추세 분석으로 교육기관 지정의 필요성 파악
 - 서울시의 장기요양 인정자 변화율(0.3%)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 2030년 서울시 노인 장기요양인정자는 약 23만 명
 - 서울 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018년 기준 약 14만 명이고 매년 자격증 소지자가 약 1만 5천 명 배출되고 있어 적극적인 교육기관 확대와 요양보호사 배출 노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 당해 연도 요양보호사 추계 산식을 이용해 요양보호사 수요에 비해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경우 교육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는 방안 제안
 - 거리제한 기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치구 또는 권역별 요양보호사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 검토

1. 당해 연도 급여이용자 산출

노인추계인구수 X (전년도 전체노인인구 대비 노인인정자 비율 + 0.3%) X 전년도 인정자 대비 급여 이용자 비율
 = 당해연도 급여 이용자 수(A)
 → A X 전년도 급여이용자 중 시설이용률 = 시설급여이용자(B), A - B = 재가급여이용자(C)
 → (B)/2(법정인력 배치기준: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2인) + (C)/1.2(법정인력 배치기준: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1.2인)
 = 필요 요양보호사 수(D)

2. 현업 종사 요양보호사 수 산출

- 전체 자격증 소지자 × 현업 종사 비율(전체 자격증 소지자 대비 전년도 요양보호사 수) = 현업 요양보호사(E)



D < E = 요양보호사 교육 인원 증원 불필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제한
 D > E = 요양보호사 교육 인원 증원 필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허용

[그림 10] 당해 연도 요양보호사 추계 산식

-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 개선과 자격시험 난이도 조정,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질적 성장 모색
 - 2017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대비 53.4%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의 현장 근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의 합격률은 연평균 86%로 시험의 난이도 조정, 교과목 이수 시간 또는 과목 확대, 체계적인 현장실습 제공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의 질적 향상 도모

I 교육기관 관리·감독 효율화를 위한 평가체계 도입과 운영주체 검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지침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

- 획일적인 중앙정부 지침이 아닌 서울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지침 개선 필요
 - 장기요양보험 전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관할하지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관리·감독 업무 담당
 - 교육기관 허가, 자격증 교부는 서울시가 담당하고 실습기관 관리·감독은 자치구 업무로 구분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
 -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이나 큰 틀에서의 기준만 중앙정부가 지정하고, 교육기관 운영과 관리·감독 권한은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향이 바람직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도입

-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기관의 질적인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도입 필요
 -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법적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정갱신제, 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에서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평가와 같은 방식 차용
 - 평가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평가지표 개발, 추진체계 구축, 예산확보 필요
 - 평가지표에는 교육내용과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교육생 모집의 공정성, 만족도, 시험 합격률과 취업률 등 질적인 측면 추가 필요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기관이 담당할 것을 제안
 - 교육기관 평가 시범사업 경험이 있는 서울시복지재단이나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같은 별도의 기관이 평가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보건복지부·서울시복지재단은 2009년 교육의 내용·환경과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함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매뉴얼을 제작하고 우수교육기관 선정
 - 서울시는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자치구 담당자 교육으로 교육기관 상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경험 보유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평가전담기관으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 과정을 거쳐 지정 여부 결정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과 관리·감독 효율화를 위한 업무대행·위탁방안 모색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업무대행 또는 위탁 운영으로 돌봄의 공공성 확보
 - 교육기관의 교육수준은 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나 현재의 담당인력 1인 체계로는 효율적인 교육기관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사회서비스원은 담당 업무의 성격과 설치 조례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관리가 가능
 - 2021년까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가 25개 자치구로 확장될 계획으로, 접근성 높고 전문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공공에 의한 표준 교육기관 모델 제시로 민간 교육기관을 선도하는 역할 담당 기대
 - 신생조직으로 업무 수행경험이 적고 인지도가 낮아 위탁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교육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대안으로 판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자치구로 관리·감독 업무 이관
 - 자치구 업무 이관 시 지리적 관할범위가 좁아져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 증대 예상
 - 교육기관(실습기관) 지도·점검, 자격증 교부를 위한 서류 검정업무 등을 자치구로 위임하여 점검체계 일원화 시행
 - 자치구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는 개정을 추진 중인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교육기관 감독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군구로 변경하고 인력확보 동반 필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습 기능에 중점을 둔다면 교육청으로의 업무 이관 고려 가능
 -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을 거친 뒤 교육청에 신고하면 개설 가능
 - 「학원법」과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기준이 각각 달라 주기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 있고, 일부 법률 개정과 서울시·교육청 간 협의 필요

I 연중 지속 운영 위해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

강의실 사용과 수강료 기준 완화 등 운영지침 개선

- 자격시험 시기 외에도 교육기관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
 - 보수교육·치매교육과 같은 돌봄 관련 교육과정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의실 사용 관련 양성지침 기준 완화
 - 현실적인 수준으로의 수강료 인상과 학습기자재 공동구매 대행 또는 일부 비용 지원 고려

돌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 도모

- 협의체 성격의 서울시 장기요양 관련 돌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교류 활성화
 -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다수의 민간사업체로 상호 간 경쟁구도 속에서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경험이 적어 사업운영에 고충
 - 교육기관 운영자, 돌봄제공자, 지역사회 장기요양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교류의 장 마련 필요
 - 싱가포르의 노인 돌봄서비스 조정을 위한 단일 기관인 AIC(돌봄통합기관)는 연구소, 병원, 재단 등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 지역사회 돌봄제공자에게 교육과정을 제공
 - 독일 '노인요양사 교육 서비스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교육기관, 직업협회, 고용지원센터 등이 함께 노인요양사 양성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네트워크 형성 등의 역할 담당
 -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련 네트워크 구축은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거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협회 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역할 담당 가능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